

##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2012.08)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 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 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

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분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

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2.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7조(계약의 해지), 제19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5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④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계약체결시에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및 보장 내역)**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 약관에 기재된 보상하는 손해의 사유로서, 아래의 세 가지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하 “사고”라 합니다)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사건

나.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 및 의무를 실제로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주장된 경우

다.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의 보장내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 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 변호사 선임료
- 법정관련 비용(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 전문가 의견서 비용(의사, 감정인, 대학교수 등)
- 패소 시 법원에 의해 확정된 상대방 소송비용
- 회사가 심사하여 담보할 수 있는 공탁금에 대한 보증보험비용
- 통역료
- 복사비

**<용어 풀이>**

“인지대”는 인지의 값으로 치르는 돈입니다.

“송달료”는 소송관련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증인여비”는 법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증인의 교통비, 일당, 숙박비, 식비로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탁금”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입니다.

2.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의 해결 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 승소 가능성의 조사비용

- 법률 서비스 비용
- 조정 : 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률전문가와 기타 전문가의 용역서비스와 그 비용
- 중재 : 중재에 따른 서비스 비용

**<용어 풀이>**

"조정"은 법원 또는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분쟁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분쟁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재"는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3. 법률 상담 서비스 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법률 상담
- 변호사가 전화로 제공하는 법률 상담
- 변호사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법률 상담
- 변호사가 서면으로 제공하는 법률 상담

4. 기타지원 서비스

- 법률정보
- 법률 서식 제공
- 보험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서류 및 자료의 부분을 보관
- 24시간 긴급전화 접수 서비스

③ 제2항의 소송은 하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1심 소송, 항소심, 상고심, 파기 환송심을 말하며 각각은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 이전 체결된 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사고
2.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사고
3.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4. 위 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사고
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사고
6. 유전공학에 의한 음식물의 섭취 또는 치료약의 투약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
7. 국제법 또는 국가간 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타국을 다툼의 당사자로 하는 사고
8.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대한민국 법정 외에서의 다툼
9. 이 계약의 책임개시일 전에 이미 개시된 사고(법적 절차의 진행여부를 불문합니다)
10.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11.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형법상 범죄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
12. 도박, 내기 등 사행행위에 기인한 사고
13.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한 사고
14. 동일보험증권의 피보험자들 간의 이해상충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
15. 이혼 또는 민법 친족편과 관련 된 사고
16.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사고
17. 피보험자가 회사(다스법률비용보험) 또는 회사의 대리인에 대해 제기하는 사고
18. 주차, 정차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의한 벌금, 과태료와 관련한 사고
19. 헌법소원과 관련한 사고

**<용어 풀이>**

“헌법소원 “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입니다.

20. 지적재산권, 특허,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및 이와 유사한 재산권을 사유로 하는 사고

**<용어풀이>**

“실용신안권 “이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상의 편리를 위하여 물품의 형상, 구조 따위에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하는 것을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입니다.

21. 담합 또는 반독점 및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고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단체적이고 집단적인 쟁의행위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위에 기인한 사고
23. 피보험자의 재산을 열람/공개해야 하는 개인 파산관련 사고
24. 법률비용을 제외한 각종 합의금, 판결금, 벌금 및 과태료 등 법률상 또는 계약상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금전 및 용역

②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 법적 다툼의 개시기에 그러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던 경우로서, 소송 중 혹은 소송결과 그러한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소송과 관련하여 회사가 이미 지급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진행 중인 소송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송 진행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소송의 중단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제5조에서 규정한 보상하는 사고이나 그 사고가 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중 아래 표에 기재된 계약권리보호, 행정권리보호, 세무권리보호, 사회권리보호, 이웃권리보호, 노동권리보호와 관련한 것으로서 이 계약

의 최초책임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생한 것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단, 변호사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법률상담과 보험계약을 연속적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특별약관 (권리보호)    | 조항 (호)                    |
|----------------|---------------------------|
| 1. 생활용 부동산     | 제1조 (2호,3호,4호,5호)         |
| 2. 생활용 부동산 임대인 | 제1조 (2호,3호,4호,5호)         |
| 3. 사업용 부동산     | 제1조 (2호,3호,4호,5호)         |
| 4. 가족생활        | 제1조 (2호,5호,6호,9호,11호)     |
| 5. 일상생활 도로교통   | 제1조 (2호,5호,6호)            |
| 6. 사업 도로교통     | 제1조 (2호,5호,6호)            |
| 7. 법률상담        | 제1조 (2호,5호,7호,9호,11호)     |
| 8. 사업          | 제1조 (2호,5호,7호,8호,9호)      |
| 9. 홈 리걸 케어     | 제1조 (2호,5호,6호,9호,11호,12호) |
| 10.비즈니스 리걸 케어  | 제1조 (2호,5호,6호,9호,11호,12호) |

**제7조(보험기간에 대한 자동연장)** 회사는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5조(보상하는 손해 및 보장내역)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가 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중 상기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4항 표에 기재된 계약권리보호, 행정권리보호, 세무권리보호, 사회권리보호, 이웃권리보호, 노동권리보호와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기간을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90일까지로 연장하여 드립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금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②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말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끝납니다.

③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금이용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1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한도로 합니다. 이 한도는 개별 사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한도입니다.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

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그 손해에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9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0조(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21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을 안 때에는 각호의 내용을 지체 없이 회사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1. 다툼에 관한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다툼의 근거가 되는 계약, 정황 및 사실관계
3. 다툼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의 예상금액
4. 다툼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입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및 영향에 대한 평가
5. 다툼에서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의 존재여부 및 그 내용
6.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 및 관련자료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소송에 패소하거나 소송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회사에 알림으로써 소송절차가 개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법률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제2항 및 제3항으로서, 회사가 이미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다툼의 승률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증거들을 수집,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다툼의 결과로 예상되는 판결 상의 손해배상청구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 또는 상대방의 손해배상권을 축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기타 선임 또는 자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른 조치

②소송의 진행 중 새로운 증거의 출현 또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의 고시에 따라 패소가 확실 시 됨으로써 회사가 소송의 종단을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때에는 그 요청을 수락하여야 합니다.

③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법률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집행된 비용에 대한 변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사고통지에 대한 회사의 보상절차)** ①피보험자는 보험상품에 포함된 담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에 먼저 연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계약자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승소의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변호사나 전문사정인의 선임, 소송절차의 개시 또는 여타의 법적 수단의 착수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비용을 부담할 회사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피보험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소송절차의 수행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③피보험자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변호사 관



련 비용은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및 그 규칙 제3조의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변호사의 소송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 변호사는 피보험자에게 약관이나 이 법률비용보험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4조(보험금의 지급 및 자기부담금)** ①피보험자가 제23조 제1항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보험증권
3. 법원의 판결문 등 법률상 분쟁해결 절차의 종결과 관련된 서류
4.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변호사가 발급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본
6.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제1항의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에 대해 판단하기 위하여 회사 및 그 대리인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③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률분쟁 종결에 앞서 미리 일정 부분의 법률비용(단, 변호사 보수는 제외함)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최종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이미 지급한 법률비용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분쟁해결 절차가 종결된 후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회사는 제4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합니다.

1. 회사의 동의를 받아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각 심급 별 10만원  
(총 30만원 한도)
2.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비용 총 금액의 10%
3. 위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비용이 법률 상담비용만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보험금의 분담 등)**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체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7조(대위권)** ①회사가 제24조(보험금의 지급 및 자기부담금)의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판결, 결정 등을 통하여 받을 법률비용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전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8조(조사)** ①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9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내용

**제3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6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7조(단체보험의 적용특칙)**①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계약자로서 단체 내부의 취업 규정 등 내부규약에 근거하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경우에는 제19조(계약의 무효)의 단서 조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제38조(준거법)**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
| 1,000만원까지 부분   | 8%            |
|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br>[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 $\frac{7}{100}$ ]  | 7%            |
|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br>[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frac{6}{100}$ ] | 6%            |
|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br>[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 $\frac{5}{100}$ ] | 5%            |
|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br>[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frac{4}{100}$ ] | 4%            |
|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br>[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 $\frac{3}{100}$ ]     | 3%            |
|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br>[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frac{2}{100}$ ]             | 2%            |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br>[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frac{1}{100}$ ]             | 1%            |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br>[9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frac{0.5}{100}$ ]                 | 0.5%          |

## 가. 보험사고 관련 특별약관

### 1. 생활용부동산 권리보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할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및 보장 내역)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주거를 목적으로 통상적이고 적법하게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던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물, 주택에 부속된 토지 (이하 “부동산”이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아래 각호의 행위들로서 법률적인 조치, 조정 내지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손해배상 권리보호: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2. 계약 권리보호: 개인적 필요에 의한 일상생활의 계약상 분쟁
3. 법원에서의 세금 권리보호: 법원에서의 세무관련 분쟁(단, 세무관련 상담은 제외)
4. 행정 권리보호: 행정 기관, 정부 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5. 이웃 권리보호: 토지 또는 재산 관련 권리의 이유로 직접 인접한 이웃간에 발생한 민사 분쟁
6. 법률상담: 상기 각호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조(보상하는 손해)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각호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제1조 각호의 사유가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의 직무와 관련되었거나 업으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2.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관한 경우
3.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과 관련한 분쟁.

4.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할 부동산의 설계 및 건축과 관련한 분쟁.
5.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할 부동산의 건축법상 변경을 위한 허가나 신고와 관련한 분쟁.
6. 상기 3-5호까지 금융과 관련된 경우
7.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조치인 경우. 다만, 이들 법에 기초한 시행자 등이 해당 법률에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는 보상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①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아래 각호의 가족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와 자녀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이상을 받는 근로자인 성년자녀는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금치산자”란 가정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정치산자”란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나 재산의 낭비로 자신이나 가족을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낭비자로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2. 생활용부동산 임대인 권리보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할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및 보장 내역)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유자로서 직접 주거하지 않고 임대한 아파트, 빌라, 연립 등 다세대 주택(주거용으로 신고된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과 관련하여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아래 각호의 행위들로서 법률적인 조치, 조정 내지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손해배상 권리보호: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2. 계약 권리보호: 개인적 필요에 의한 일상생활의 계약상 분쟁
3. 법원에서의 세금 권리보호: 법원에서의 세무관련 분쟁 (단, 세무관련 상담은 제외)
4. 행정 권리보호: 행정기관, 정부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5. 이웃 권리보호: 토지 또는 재산 관련 권리의 이유로 직접 인접한 이웃간에 발생한 민사 분쟁
6. 법률상담: 상기 각호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조(보상하는 손해)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각호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제1조 각호의 사유가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의 직무와 관련되었거나 업으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2.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관련한 경우
3.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과 관련한 분쟁.
4.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할 부동산의 설계 및 건축과 관련한 분쟁.

5.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할 부동산의 건축법상 변경을 위한 허가나 신고와 관련한 분쟁.
6. 상기 3-5호까지 금융과 관련된 경우
7.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조치인 경우. 다만, 이들 법에 기초한 시행자 등이 해당 법률에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는 보상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①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아래 각호의 가족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와 자녀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인 성년자녀는 제외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3. 사업용 부동산 권리보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할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및 보장 내역)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생계를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소유, 사용, 관리하는 토지, 주택, 건물 및 그 부속물(이하 “부동산”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아래 각호의 행위들로서 법률적인 조치, 조정 내지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다.

1. 손해배상 권리보호: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2. 계약 권리보호: 사업적 필요에 의한 계약상 분쟁
3. 법원에서의 세금 권리보호: 법원에서의 세무관련 분쟁 (단, 세무관련 상담은 제외)
4. 행정 권리보호: 행정 기관, 정부 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5. 이웃 권리보호: 토지 또는 재산 관련 권리의 이유로 직접 인접한 이웃간에 발생한 민사 분쟁
6. 법률상담: 상기 각호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조(보상하는 손해)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각호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제1조 각호의 사유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이 부동산 매매, 알선, 중개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2.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관련한 경우
3.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과 관련한 분쟁.
4.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할 부동산의 설계 및 건축과 관련한 분쟁.
5.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할 부동산의 건축법상 변경을 위한 허가나 신고와 관련한 분쟁.
6. 상기 3-5호까지 금융과 관련된 경우
7.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조치인 경우. 다만, 이들 법에 기초한 시행자 등이 해당 법률에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는 보상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①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계약자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자”란 계약자 및 계약자의 동거가족 혹은 피용자로서 그 사업을 위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4. 가족생활 권리보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할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및 보장 내역)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통상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아래 각호의 행위들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법적 다툼으로서 법률적인 조치, 조정 내지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손해배상 권리보호: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2. 계약 및 소유권 권리보호: 개인적 필요에 의한 일상생활의 계약 및 소유권 분쟁
3. 형법 권리보호: 과실로 인한 형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4. 행정규정위반 권리보호: 행정적 규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5. 법원에서의 세금 권리보호: 법원에서의 세무관련 분쟁 (단, 세무관련 법률 상담은 제외)
6. 행정 권리보호: 행정기관, 정부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7. 학교 권리보호: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및 대학의 관리 주체와의 분쟁
8. 피해자 권리보호: 형사 폭력 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9. 노동법 권리보호: 고용 계약에 관한 분쟁

10. 공무원 및 전문 직업인의 복무규정 권리보호: 공무원 및 전문직업인의 복무규정과 관련한 분쟁
11. 사회 권리보호: 사회보장 관련 분쟁
12. 법률상담: 상기 각호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단, 이혼 및 상속과 관련한 법률상담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4호 내지 제16호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피보험자에 한하여 년 1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제1조(보상하는 손해)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각호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토지, 주택, 건물 및 그 부속물에 관련한 경우와 생활용 부동산 권리보호 특별약관과 생활용 부동산 임대인 권리보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에 소유, 사용, 관리하는 교통 승용구와 관련한 경우와 일상생활도로교통 권리보호 특별약관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업으로 영위하는 자영업 또는 피보험자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직무에 관련한 경우와 사업 권리보호 특별약관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승용구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2. 스쿠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않음)

**제3조(피보험자)** ①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아래 각호의 가족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와 자녀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인 성년자녀는 제외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5. 일상생활 도로교통 권리보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할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및 보장내역)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에 소유, 사용,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교통 승용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아래 각호의 행위들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법적 다툼으로서 법률적인 조치, 조정 내지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손해배상 권리보호: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2. 계약 및 소유권 권리보호: 개인적 필요에 의한 일상생활의 계약 및 소유권 분쟁
3. 형법 권리보호: 과실로 인한 형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4. 행정규정위반 권리보호: 행정적 규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5. 법원에서의 세금 권리보호: 법원에서의 세무관련 분쟁 (단, 세무관련 법률상담은 제외)
6. 행정 권리보호: 행정 기관, 정부 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7. 법률상담: 상기 각호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승용구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2. 스쿠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않음)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조(보상하는 손해)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각호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에 기인하는 경우
2.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된 경우

**제3조(피보험자)** ①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아래 각호의 가족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와 자녀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인 성년자녀는 제외합니다.

**제 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6. 사업용 도로교통 권리보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할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및 보장 내역)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생계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소유, 사용,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교통 승용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아래 각호의 행위들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법적 다툼으로서 법률적인 조치, 조정 내지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손해배상 권리보호: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2. 계약 및 소유권 권리보호: 교통 승용구와 관련된 계약 및 소유권 분쟁
3. 형법 권리보호: 과실로 인한 형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4. 행정규정위반 권리보호: 행정적 규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5. 법원에서의 세금 권리보호: 법원에서의 세무관련 분쟁 (단, 세무관련 법률상담은 제외)
6. 행정 권리보호: 행정 기관, 정부 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7. 법률상담: 상기 각호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승용구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2. 스쿠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않음)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제1조(보상하는 손해)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각호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에 기인하는 경우



**제3조(피보험자)** ①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계약자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자”란 계약자 및 계약자의 동거가족 혹은 피용자로서 그 사업을 위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7. 법률상담권리보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할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및 보장내역)의 사고라 함은 아래 각호의 행위들로서 법률상담서비스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사업 권리보호 특약, 사업용 부동산 권리보호 특약, 사업용 도로교통 권리보호 특약에서 담보하는 보상하는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손해배상 권리보호: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2. 계약 및 소유권 권리보호: 개인적 필요에 의한 일상생활의 계약 및 소유권 분쟁
3. 형법 권리보호: 과실로 인한 형법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4. 행정규정위반 권리보호: 행정적 규정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5. 노동법 권리보호: 고용 계약에 관한 분쟁
6. 공무원 및 전문 직업인의 복무규정 권리보호: 공무원 및 전문직업인의 복무규정과 관련한 분쟁
7. 행정 권리보호: 행정 기관, 정부 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8. 학교 권리보호: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및 대학의 관리 주체와의 분쟁
9. 사회 권리보호: 사회 보장 관련 분쟁

- 10. 피해자 권리보호: 형사 폭력 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 11. 이웃 권리보호: 토지 또는 재산 관련 권리의 이유로 직접 인접한 이웃 간에 발생한 민사 분쟁

②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 및 보장내역) 제2항 제3호에 의한 법률 상담(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공 하는 법률 상담은 제외)을 위한 비용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 ①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아래 각호의 가족을 말합니다.

- 1.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2.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와 자녀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이상을 받는 근로자인 성년자녀는 제외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8. 사업 권리보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할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및 보장 내역)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생계를 위한 사업을 영위(이하 “사업” 이라 합니다) 하던 중 통상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아래 각호의 행위들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법적 다툼으로서 법률적인 조치, 조정 내지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1. 손해배상 권리보호: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단,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는 제외하되, 변호사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법률상담비용은 보장)

2. 계약 권리보호 :

가. 사업적 필요에 의한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분쟁

나. 사업적 필요에 의한 가. 이외의 사업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분쟁  
(단, 이 경우 변호사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법률 상담 비용만 보장)

3. 형법 권리보호: 과실로 인한 형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4. 행정규정위반 권리보호: 행정적 규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5. 노동법 권리보호: 고용 계약에 관한 분쟁

6. 공무원 및 전문 직업인의 복무규정 권리보호: 공무원 및 전문직업인의 복무규정과 관련한 분쟁

7. 법원에서의 세금 권리보호: 법원에서의 세무관련 분쟁 (단, 세무관련 법률상담은 제외)

8. 행정 권리보호: 행정 기관, 정부 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9. 사회 권리보호: 사회 보장 관련 분쟁

10. 피해자 권리보호: 형사 폭력 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11. 법률상담: 상기 각호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조(보상하는 손해)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각호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토지, 주택, 건물 및 그 부속물에 관련한 경우와 사업용 부동산 권리보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교통승용구와 관련한 경우와 사업용 도로교통 권리보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피보험자)** ①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계약자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자”란 계약자 및 계약자의 동거가족 혹은 피용자로서 그 사업을 위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④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4호에도 불구하고 동일 증권상의 피보험자들 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주피보험자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9. 홈 리걸 케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할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 및 보장 내역)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소유자 또는 임차자로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교통승용구'와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물, 주택에 부속된 토지'(이하 "부동산"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발생한 통상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아래 각호의 행위들로서 의도하지 않게 법적 다툼이 발생하여 법률적인 조치, 조정 내지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손해배상 권리보호: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2. 계약 및 소유권 권리보호: 개인적 필요에 의한 일상생활의 계약 및 소유권 분쟁
3. 형법 권리보호: 과실로 인한 형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4. 행정규정위반 권리보호: 행정적 규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5. 법원에서의 세금 권리보호: 법원에서의 세무관련 분쟁 (단, 세무관련 법률 상담은 제외)
6. 행정 권리보호: 행정기관, 정부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7. 학교 권리보호: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및 대학의 관리 주체와의 분쟁
8. 피해자 권리보호: 형사 폭력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9. 노동법 권리보호: 고용계약에 관한 분쟁
10. 공무원 및 전문 직업인의 복무규정 권리보호: 공무원 및 전문직업인의 복무규정과 관련한 분쟁
11. 사회 권리보호: 사회보장 관련 분쟁
12. 이웃 권리보호: 토지 또는 재산 관련 권리의 이유로 직접 인접한 이웃 간에 발생한 민사 분쟁
13. 법률상담: 상기 각호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단, 이혼 및 상속과 관련한 법률상담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4호 내지 제16호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피보험자에 한하여 연 1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승용구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2. 스쿠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조(보상하는 손해)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각호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에 기인하는 경우
2.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된 경우

3.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업으로 영위하는 자영업 또는 피보험자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직무에 관련한 경우와 사업 권리보호 특별약관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의 직무와 관련되었거나 업으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5.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관련한 경우
6.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과 관련한 분쟁
7.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할 부동산의 설계 및 건축과 관련한 분쟁
8.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할 부동산의 건축법상 변경을 위한 허가나 신고와 관련한 분쟁
9. 상기 6-8호까지 금융과 관련된 경우
10.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조치인 경우. 다만, 이들 법에 기초한 시행자 등이 해당 법률에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는 보상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①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아래 각호의 가족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와 자녀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인 성년자녀는 제외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10. 비즈니스 리걸 케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할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 및 보장 내역)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유자 또는 임차자로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상생활을 위한 '교통승용구'와 주거용 또는 사업용 '건물 및 그 부속물, 부속된 토지'(이하 "부동산이라고 함)」과 관련하거나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또는 '생계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던 중 통상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아래 각 호의 행위들로서 의도하지 않게 법적 다툼이 발생하여 법률적인 조치, 조정 내지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손해배상 권리보호 :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단,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는 제외하되, 변호사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법률상담비용은 보장)
2. 계약 및 소유권 권리보호 :
  - 가. 개인적 필요에 의한 일상생활 또는 교통승용구와 관련된 계약 및 소유권 분쟁
  - 나. 사업적 필요에 의한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분쟁
  - 다. 사업적 필요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분쟁
  - 라. 사업적 필요에 의한 나. 와 다. 이외의 사업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분쟁 (단, 이 경우 변호사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법률 상담비용만 보장)
3. 형법 권리보호: 과실로 인한 형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4. 행정규정위반 권리보호: 행정적 규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5. 법원에서의 세금 권리보호: 법원에서의 세무관련 분쟁 (단, 세무관련 법률 상담은 제외)
6. 행정 권리보호: 행정 기관, 정부 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7. 학교 권리보호: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및 대학의 관리 주체와의 분쟁
8. 피해자 권리보호: 형사 폭력 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9. 노동법 권리보호: 고용 계약에 관한 분쟁
10. 공무원 및 전문 직업인의 복무 규정 권리보호: 공무원 및 전문직업인의 복무 규정과 관련한 분쟁
11. 사회 권리보호: 사회 보장 관련 분쟁
12. 이웃 권리보호: 토지 또는 재산 관련 권리의 이유로 직접 인접한 이웃

간에 발생한 민사 분쟁

13. 법률상담: 상기 각호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단, 이혼 및 상속과 관련한 법률상담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4호 내지 제16호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피보험자에 한하여 년 1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승용구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2. 스쿠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않음)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조(보상하는 손해)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각호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에 기인하는 경우
2.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된 경우
3.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교통 승용구와 관련한 경우와 사업용 도로교통 권리보호 특별약관 제 1조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입 매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관련된 경우
5.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관련한 경우
6.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과 관련한 분쟁.
7.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할 부동산의 설계 및 건축과 관련한 분쟁



8.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할 부동산의 건축법상 변경을 위한 허가나 신고와 관련한 분쟁
9. 상기 6-8호까지 금융과 관련된 경우
10.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조치인 경우. 다만, 이들 법에 기초한 시행자 등이 해당 법률에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는 보상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①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아래 각호의 가족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와 자녀
3.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계약자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자”란 계약자 및 계약자의 동거가족 혹은 피용자로서 그 사업을 위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제1항에 불구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② 보통약관 제6조(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4호에도 불구하고 동일 증권상의 피보험자들 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주 피보험자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상을 받는 근로자인 성년자녀는 제외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나. 제도성 특별 약관 및 추가 특별약관

###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법률비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 불구하고 회사는 이 보험의 보험료를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보험료를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계약자는 그 분할방법에 따른 납입기일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납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미납입보험료의 공제)**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2. 보험료 납입면제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이 특약은 보험료분할납입특약(이하 “분납특약” 이라 합니다)을 부가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분납특약 제1조 제2항에 불구하고 보험계약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보험계약자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중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수급카드를 매월 보험료 납입 응답일 2일 전까지 회사에 접수한 경

우 이 특약에 따라 차기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납입면제 기간 등)** ①제1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36회 분할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장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면제기간에 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15일 기준으로 월단위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③월납이 아닌 분할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 응답일 당시 납입면제 상태이면 분납보험료를 면제해 드리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일이 해제되는 시점에 보험료 납입면제 개시일로부터 납입면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납입면제 기간을 제외한 미납보험료를 납입면제 종료일 후 최초 도래하는 청구일의 보험료로 합니다. 다만, 이미 납입면제 혜택을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④이미 분납보험료가 납입되어 납입면제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차기 분납 보험기간에서 납입면제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큼을 제외한 기간의 보험료를 납입면제 종료일 후 최초 도래하는 청구일의 보험료로 합니다.

⑤제1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를 매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납입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①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4.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규약에 따른 단체를 말합니다.)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의 경우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써 노사합의에 의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2종 또는 제3종 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이 계약이 성립된 후에 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정한 단체의 소속원은 그 소속한 시점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되며, 단체 소속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2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②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 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4조(해지시 환급)**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산한 경과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제5조(적용상의 특칙)** ①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교

부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가입한 때에는 동일보험증권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들 간의 이해상충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5.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 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